#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필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705

발의연월일: 2020. 11. 25.

발 의 자:정필모·이용빈·유정주

한준호 • 이학영 • 신영대

변재일 • 허 영 • 박광온

오영환 · 김성주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 및 전자문서보관등을 직접수행하는 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(이하 "임원등"이라함)에 대해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.

「방송법」, 「전기통신사업법」,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등 다수 법률에서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엄격히 하고 있음.

그런데 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있어서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등의 업무와 관련된 특수성을 고려할 때, 공인전 자문서센터의 지정에 대한 결격사유를 현행보다 더 엄격히 규정할 필 요가 있음. 이에 결격사유 규정을 더욱 강화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과 관련된 자격관리를 엄격히 하고자 함(안 제31조의3제1호다목).

#### 법률 제 호

##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1조의3제1호다목 중 "2년"을 "3년"으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거나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받은 자는 제31조의3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따른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1조의3(공인전자문서센터의	제31조의3(공인전자문서센터의
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	결격사유)
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전	
자문서센터로 지정을 받을 수	
없다.	
1. 임원 및 전자문서보관등을	1
직접 수행하는 직원으로서 대	
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(이하	
"임원등"이라 한다) 중 다음	
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	
는 사람이 있는 자	
가.・나. (생 략)	가.・나. (현행과 같음)
다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	다
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	
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	
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	
면제된 날부터 <u>2년</u> 이 지나	<u>3년</u>
지 아니한 사람	
라. ~ 바. (생 략)	라. ~ 바. (현행과 같음)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